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1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재난관리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
- (2) 설치목적 : 신속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
- (3) 설치년도 : 2005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재난예방 및 경감, 재난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인명피해 제로화, 재난피해 최소화 및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
- (2)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: 기본방향 : 안전한 도시구축과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재난예방 사업 중점 추진
 중점추진과제 :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,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0년도 말 현재액 ㉑	2011년도 조성계획			2011년도 말 현재액㉒ = ㉑ + ㉓	비 고
	수입 ㉔	지출 ㉕	증감 ㉖ = ㉔ - ㉕		
58,952,013	20,202,043	23,745,230	△3,543,187	55,408,826	

(2) 자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입, 기타 잡수입

(3) 지원기준 : 재난예방사업비 지원 : 시, 구,군별 신청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, 가용자원 80% 범위내에서 지원

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: 기금의 가용자원 한도내에서 우선순위별 지원

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: 이주에 소요된 실비

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 : 소요금액의 70% 이하

(용자한도액 : 3,000만원)

(4) 지원대상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사업